

부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제435호
의결 년월일	2005. 10. 11 (제122회)

제출년월일 : 2005. 9. 29
제 출 자 : 부천시장

2005년 9월 13일 부천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부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재의요구가 지시되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 재의요구 이유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회기수당을 동법 시행령상의 지급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 ‘05.8.5 동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을 개정하여 지급범위를 상향 조정한 것이 곧바로 지방의원에게 곧바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의 상한선을 인상 조정한 것에 불과 한 것임.
- 소급적용을 규정한 부칙규정에 대해서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가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에도 기타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하겠음.
- 동개정 조례안은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려는 것으로
 -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법령불소급의 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법적 안정성, 일반주민이 가지고 있는 법령불소급원칙에 대한 신뢰보호,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

□ 첨부서류

- 부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1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2
- 경기도 재의요구 지시 공문 사본 : 별첨 3

별첨 1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중 “900,000원” 및 “200,000원”을 각각 “90만원” 및 “20만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70,000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부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u></p> <p>제2조(의정활동비) ① (생략)</p> <p>②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u>900,000원</u>과 보조활동비 <u>200,000원</u>으로 하고, 부천시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p> <p>제3조(회기수당) 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u>70,000원</u>으로 하고,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p>	<p><u>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u></p> <p>제2조(의정활동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90만원</u>----- ----- <u>20만원</u> ----- ----- -----.</p> <p>제3조(회기수당)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10만원</u> ----- -----.</p>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등) ①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조례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⑧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부

3.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9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⑥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당해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
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
의결된 사항이 2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 장관이 불분명한 때에
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
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회기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별표 6] <개정 2005.8.5>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

구 분	회기수당 지급범위	원격지 회의 출석비
시·도 의회의원	1일 110,000원	별표 7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교통운임(현지 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 1)의 범위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1일 100,000원	